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15- 106호

정릉3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계획 공고(안)
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승인 취소된 정릉3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과 관련하여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」제15조의4제8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계획을 공고합니다.

2015년 1월 29일

성 북 구 청 장

1. 지급 신청내용
   가. 승인취소 추진위원회 : 정릉3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
   나. 지급신청인 : 정릉3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대표자 박명헌
   다. 신청금액 : 금619,000,000원
   라. 신 청 일 : 2015. 1. 22

2. 지급계획
   가. 지급금액 : 금619,000,000원
   나. 지급대상 : 정릉3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대표자 박명헌
   다. 지급방법 : 신청 대표자 통장계좌번호로 계좌이체
   라. 공고기간 : 2015. 1. 29 ~ 2. 12
   마. 지급일자 : 공고 완료일로부터 10일 이후

3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청 건축과(☎2241-291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